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검 토 보 고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정의에서 가축분뇨 배출자 제외〉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77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정의에서 가축분뇨 배출자 제외	2

I. 제안경위

2025년 6월 17일 문대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은 2025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 중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자금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건폐율 부족, 부지확보의 어려움, 지역 민원으로 인한 인·허가 애로 등으로 인해 사실상 바이오가스 시설 투자가 제한적인 실정임.

이에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정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농가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정의에서 가축분뇨 배출자 제외

개정안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대상이 되는 유기성 폐자원 배출·처리자 중 가축분뇨 배출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매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1. (생략) 2. 민간의무생산자: 제1호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u>유기성</u>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 ② ~ ④ (생략)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u>가축분뇨를 제외한 유기성</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¹⁾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량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부과하는 제도로, 그 대상은 공공부문(지자체장,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및 민간부문(대규모 배출자 또는 처리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으로 구분됨.

민간의무생산자의 경우 ① 3년간 월평균 돼지 사육두수 2만5천두 이상, ② 가축분뇨 처리용량 200m³/일 이상인 돈분 처리시설, ③ 연평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1천톤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1)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매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1. 공공의무생산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2. 민간의무생산자: 제1호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

②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각각에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수율 등을 고려한 계수(이하 “바이오가스 회수·생산계수”라 한다)를 곱한 값의 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2.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중 민간의무생산자로부터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을 제외한 양

③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각각에 바이오가스 회수·생산계수를 곱한 값의 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과 유기성 폐자원별 바이오가스 회수·생산계수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부여 대상 및 물질 】

구분	목표 부여 대상	가스화 물질	목표율
공공	지자체장 (특광역시, 특별자치 시장·도지사, 시·군·구청장)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	50%
민간*	대규모 배출자 또는 처리자	가축분뇨, 음식물	10%

* ①월평균 돼지 사육두수 2만5천두 이상 ②가축분뇨 처리용량 200m³/일 이상 처리시설 ③연평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1천톤 이상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민간 부문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데, 대상 의무생산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사업자 26개소, 가축분뇨 배출사업자 6개소, 가축분뇨 처리사업자 9개소로 총 41개소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민간의무생산자 현황('26 예정)]

구분	개소수	비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사업자	26개소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자 45,384개소('23년 기준) 대비 약 0.06%
가축분뇨 배출사업자	6개소	- 전체 축산농가 171,094개소('23년 기준) 대비 약 0.004%
가축분뇨 처리사업자	9개소	- 국고지원을 받아 설치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90개소('25년 기준) 대비 10%
총계	41개소	-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안은 대상자 중 가축분뇨 배출사업자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여 축산농가 등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임.

축산 농가의 제도 이행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는 이해되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제도 설계 당시 축산농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민간의무생산자의 범위를 확정하였고,

유기성 폐자원의 약 85%가 가축분뇨에 해당하는바 가축분뇨 관련 사업자를 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할 경우 동법의 목적인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 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최근 3개년 유기성폐자원 발생 현황('21~'23)]

(단위 : 만톤/년)

구분	2021	2022	2023
총계 (①+②+③)	6,129	6,033	5,917
①음식물	487 (7.9)	500 (8.2)	480 (8.1)
②가축분뇨	5,189 (84.7)	5,086 (83.0)	5,004 (84.6)
③하수 찌꺼기	453 (7.4)	447 (7.3)	433 (7.3)

※ '24년 유기성 폐자원 발생 현황은 관련 통계 미발표로 파악이 어려워 '21~'23년 통계로 작성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바이오가스 시설의 직접 설치를 통한 생산 외에도 위탁처리 및 생산실적 구매를 통해서도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과 같이 유기성 폐자원 중 가축분뇨를 제외하게 되면 법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가축분뇨 배출사업자 외에 가축분뇨 처리사업자도 제외되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 6788-5546